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 주 문

- 2021년 10월 12일로 종료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4월 12일까지 연장한다.

2. 제안 이유

- 동 소위원회는 당초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집행부로부터 권한을 원만하게 이양 받고 관련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인바,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4월 12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